환경표지인증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콘텐츠에서는 환경표지인증의 신청, 변경, 취소 및 제품구매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1
1.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4
1.1.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4
1.1.1.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4
1.2. 환경표지대상제품 5
1.2.1.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5
1.2.2. 제품의 선정 및 폐지 6
1.2.3. 제품의 인증기준 7
2. 환경표지인증 받기 10
2.1. 환경표지인증 절차 10
2.1.1. 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10
2.1.2. 인증신청 12
2.1.3. 제품검증 14
2.1.4. 검증완료 17
2.2. 환경표지의 사용 18
2.2.1. 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18
2.2.2.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20
2.3. 사후관리 등 21
2.3.1. 환경표지인증의 취소 21
2.3.2.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22
3.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25
3.1.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25
3.1.1. 구매의 필요성 25
3.1.2. 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25
3.2.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27
3.2.1.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27
3.2.2. 의무구매 절차 29
3.3.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32
3.3.1. 친환경대전 등 32

1.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1.1.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1.1.1.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등

"환경표지인증"이란?

▪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다음의 로고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환경표지인증의 목적

▪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환경표지인증제도 한 번에 알기

환경표지인증제도 절차도

▪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1.2. 환경표지대상제품

1.2.1.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등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

▪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

구분	내용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문구류 √ 사무용 기기류 √ 사무용 가구 등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전기 자재류 √ 수도·배관 자재류 √ 기타 자재류 √ 설비류 등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세제류 √ 섬유·가죽류 √ 기타 잡화류
가정용 기기·가구	√ 전기 기기류 √ 전자 기기류 √ 가구류 등 √ 기타 기기류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산업용 제품 및 장비	√ 원료·자재류 √ 조립 제품 및 장비 등
복합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 기타
서비스	√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 차량 공유 서비스 √ 세탁 서비스 √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 카페 서비스 √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 문화시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Q.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없는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
> A.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대상품목으로 제안하시거나 현행 기준의 개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품목여부 및 기준개발에 대한 인증평가전략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https://www.keiti.re.kr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1.2.3. 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공통적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적합해야 함

√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해야 함(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함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해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함
-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함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해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본문).

구분	내용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2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3

※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단서).

√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프리미엄 환경표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본문 전단).

▪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후단 참조).

▪ 프리미엄 환경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4).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

1.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함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봄
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및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起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음
4. 2. 및 3.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2. 또는 3.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4.에 따라 신청해야 함
6.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함

2. 환경표지인증 받기

2.1. 환경표지인증 절차

2.1.1. 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환경표지인증 절차 한 번에 알기

환경표지인증 절차도

▪ 환경표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 : 신청서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 신청서 접수
⌄	
인증신청서 접수	· 기술원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안내 · 신청업체 : 신청수수료 납부
⌄	
서류검증	· 기술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	
현장 심사 계획 통보	· 기술원 : 현장심사 및 심사원 배정 알림
⌄	
현장심사 [제품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신청업체 : 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 시험기관 : 시험분석
현장심사 [서비스 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심의 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	
시험성적서 수령 [제품인증]	·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송 · 기술원 : 성적서 수령 및 자료 검토
⌄	
심의 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인증서 교부 (온라인 출력)	· 기술원 : 환경표지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 사용	·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인증기관이 작성하여 환경부 승인)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제2호·제3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다목, 제23조제1항제9호나목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혜택내용
정부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또는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제한경쟁입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인증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이 인증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 대형마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2.1.2. 인증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8조제1항].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2항).

-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신청제품 생산 사업장이 두 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한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3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자료보완 기간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4항).

환경표지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4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6항 단서).

√ 신청기업의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시료의 시험분석기간

√ 신청기업의 사유로 현장검증이 지연된 기간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장의 현장검증이 지연되는 기간(접수일부터 현장검증일까지로 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5항·제1항제1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납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5조제1항).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13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 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 여비

※ 엔지니이어링 사업의 노임단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https://www.etis.or.kr/)-통계-임금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불

▪ 납부된 환경표지인증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2 및 제19조의2제1항제1호가목·다목).

환불대상	환불금액
신청기업의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이중 입금 전액 또는 초과 납부 금액
신청기업이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	신청수수료 전액 이내. 다만,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실태조사만 별도로 신청한 경우,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	신청수수료 전액. 다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다음에 해당되어 심사를 종료한 경우 √ 대상제품군별 적용범위에 맞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된 원료내역 또는 제조공장이 인증 당시와 다른 경우	신청수수료 전액 이내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대상이 아닌 제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제품의 신청수수료 전액
지위승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수수료 전액

2.1.3. 제품검증

환경표지인증을 위한 대상제품별 검증방법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1항).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함(다만,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위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위 1.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함(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음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음(다만, 1.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함

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함(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함)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간주함

8. 위 3.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함.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음

   √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 국제표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서류검증 및 현장검증 등

서류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수수료를 신청기업이 납부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8조의2제1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기업에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2항).

▪ 신청기업은 위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3항).

※ 신청기업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 1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4항).

▪ 위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기한은 시험검증을 위한 시험분석기간 등의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5항).

현장검증 및 실태검증조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제품에 대해 현장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1항 전단).

▹ 신청제품 생산현장에서 원료 내역 및 제조·검사 설비 등에 대한 사실 확인·검증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공통사항 및 개별 인증기준 적합 여부

- 신청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1항 후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라 현장검증과 실태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다만, 해당 사업장에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처리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9항).

√ 신청기업이 신청수수료 납부 후 제품의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

√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제품이 심사 중단된 경우

▪ 신청서비스가 신청기업의 사업장 외부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현장을 대상으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4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2항).

-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정 인증제품 등록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시판품 조사가 적합하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경우
- 기간연장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
-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Q1. 동일인정 인증제품은 무엇인가요?

A1. 동일인정 인증제품은 인증 중인 제품을 수급하여 다른 판매자가 제품명만 달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청하여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인증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경표지 인증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신청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현장검증이나 실태조사를 검증 또는 조사 항목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청기업의 관리방법과 책임 등 인증기준 준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3항 후단).

▪ 인증기업은 실태조사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실태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실태조사 기간연장의 유효기간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8항).

Q2. 현장검증과 실태검증(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현장검증은 고시된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실태검증(조사)은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환경 및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실태검증(조사) 결과 총 70점 이상을 획득한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대상제품군의 경우에는 향후 4년간 현장심사 및 램덤샘플링을 생략하고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로 갈음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자가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해당 검증결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4항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제1항).

2.1.4. 검증완료

검증의 완료

검증완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검증·현장검증·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또는 인증심의검토서와 함께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전자적 문서 포함)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9조의3 및 별지 제4호·제5호서식].

-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 결과 및 신청기업 제출서류
- 제품 사양 및 특장점 등 신청제품 설명자료
-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 그 밖에 인증심의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심의결과를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검증의 중단 및 재심의 등

검증중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검증·현장검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의2제1항).

구분	검증중단 사유
서류검증	√ 대상제품군별 적용범위에 맞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된 원료내역 또는 제조공장이 인증 당시와 다른 경우
현장검증	√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이 인증신청 시 기재된 내역과 다른 경우 √ 신청제품과 시료의 원료사용내역이 다른 경우 √ 제조 설비가 없거나 고장이 나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일부터 15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봉인 훼손으로 확인되어 채취된 시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실태조사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5의 조사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의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5의 조사항목별 이행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심사를 중단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와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의2제2항).

재심의 요청

▪ 신청기업이 인증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사유서와 함께 문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동일 제품에 대한 이의 제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3항 후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타당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으나, 재심의 요청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4항·제5항).

인증의 재신청

▪ 인증심의결과 부결 통보일부터 후 6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다시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1회만 현장검증과 시험검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전 신청에 따른 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2.2. 환경표지의 사용

2.2.1. 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 심의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시스템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29조제1항).

▪ 신청기업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0일 이내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 심의결과 효력은 소멸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2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표지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7항 후단).

> **Q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상품은 우수제품으로 선정 받을 수 있나요?**
>
> A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선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1항).
>
> A1-2. 발급받으려는 인증기업은 판매계획을 포함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2항).

환경표지인증서의 인증기간

▪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 다만, 인증기준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증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인증기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2년

√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3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이 청문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여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8항).

사용권한의 승계 금지

▪ 인증기업은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및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 포함)하게 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위승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위승계 요청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인증기업의 사업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 지위승계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조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2.2.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인증의 표시방법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1호).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44조제1항제1호].

시정 및 고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업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2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의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단서).

1. 환경표지 무단사용의 의도성이 명백한 경우

2. 최근 3년간 무단사용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었던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3. 사후관리 등

2.3.1. 환경표지인증의 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4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업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39조제1항 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4조].

-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제1항 후단).

환경표지인증 취소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

-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 인증취소 사유
- 인증취소 연월일

▪ 환경표지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5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된 제품: 3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된 제품: 1년

환경표지 제거

환경표지의 제거

▪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를 제거하고 다음의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 환경표지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
- 환경표지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1항).

-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기간이 종료된 재료 및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 조사결과 의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사용 소명서를 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환경표지 도안의 사용 중단과 삭제에 대한 의무와 벌칙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6항).

위반 시 제재

▪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2호).

2.3.2.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30조제1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 인증기업이 타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증 계약이 종료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3항).

인증내역의 변경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1항).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다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인증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적용되지 않음

- 생산공정, 설비 또는 공법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Q1.공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로그인 진행: 환경마크신청 → 환경마크 신청서 작성 → 1 신청구분(인증내역 변경신청), 2 신청용도(변경신청 or 동일인정 인증제품 변경), 3 상세 항목 설정 공장소재지(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Q2.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로그인 진행: 환경마크신청 → 환경마크 신청서 작성 → 1 신청구분(인증내역 변경신청), 2 신청용도(변경신청 or 동일인정 인증제품 변경), 3 상세 항목 설정(업체명, 대표자, 소재지)(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인증기업이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

- 해당 입증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인증기업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검사, 현장 확인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상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6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증내역 변경을 확인한 결과 변경 승인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 반려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증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7항).

> ※ 그 밖의 인증내역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간의 연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제품의 인증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까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및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1항 본문 참조).

- 인증기간 종료일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절차
- 인증기간 종료일부터 90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증에 따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알 수 있도록 환경표지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1항 단서).

▪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종료일부터 9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2항).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 자료

  ※ 이 경우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 관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발생한 문서로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의 환경성 및 품질 관련 자료
- 해당 제품·서비스의 소비자정보 관련 자료

> **Q3.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도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3. 인증기간 동안 공장소재지에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있으면 갱신 신청이 안 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등)를 완료하였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3.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3.1.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3.1.1. 구매의 필요성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등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 참조).

> **Q. 녹색제품에 환경표지인증제품도 포함되나요?**
>
> A.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은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참조).

▪ 녹색제품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면].

-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
-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 및 경제적 이익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물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 **Q. 현재 환경표지인증 중인 업체와 제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A.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에 접속 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마크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월별 인증제품 현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3.1.2. 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녹색제품의 구매방법

오프라인 녹색매장 방문구매

▪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단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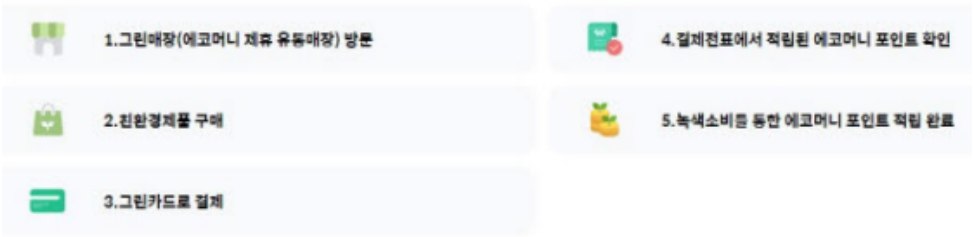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제외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함)

▪ 오프라인 녹색매장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쇼핑몰 구매

▪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다음의 사이트에서 원하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그린주의
- 엠엠피아이
- 녹색장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구매혜택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유통매장 및 제조사의 녹색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 시 제품가액의 일정 비율을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 포인트 내역 조회 및 사용은 그린카드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 제휴처마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다릅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TOP포인트 전환	에코머니 1 포인트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에코머니 1포인트는 1원과 같음)
현금 전환	에코머니 1,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전환 가능
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 결제	에코머니 30,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결제 가능
친환경 기부	에코머니 1,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1 포인트 단위로 기부 가능
상품권교환	√ 신청단위: 5,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교환 가능 √ 상품권발행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신청방법: 상품권발행처 고객센터 방문 후 직원에게 신청
친환에코머니 교환	다양한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 가능

※ 에코머니 포인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3.2.1.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면 및 11면].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친환경녹색진흥-녹색제품

정보-분야별 녹색구매-공공분야 녹색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녹색제품의 구매 및 실적집계 시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면).

구분	내용
인쇄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및 양변기 등
사무기기 유지·보수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및 프린터 등
사무기기 렌탈·리스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및 창호 등 건설자재
그 밖의 물품 구매가 포함된 모든 용역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12면).

▹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구분	내용
건설자재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 필수적인 성능 및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수처리제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 성분 및 성능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동일한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매 예외 증빙자료 필요)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지만,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다음의 경우

※ 물품구매 당시 다른 우선구매의 최소 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구매하려는 제품과 동일한 규격의 타 우선구매 인증보유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다음의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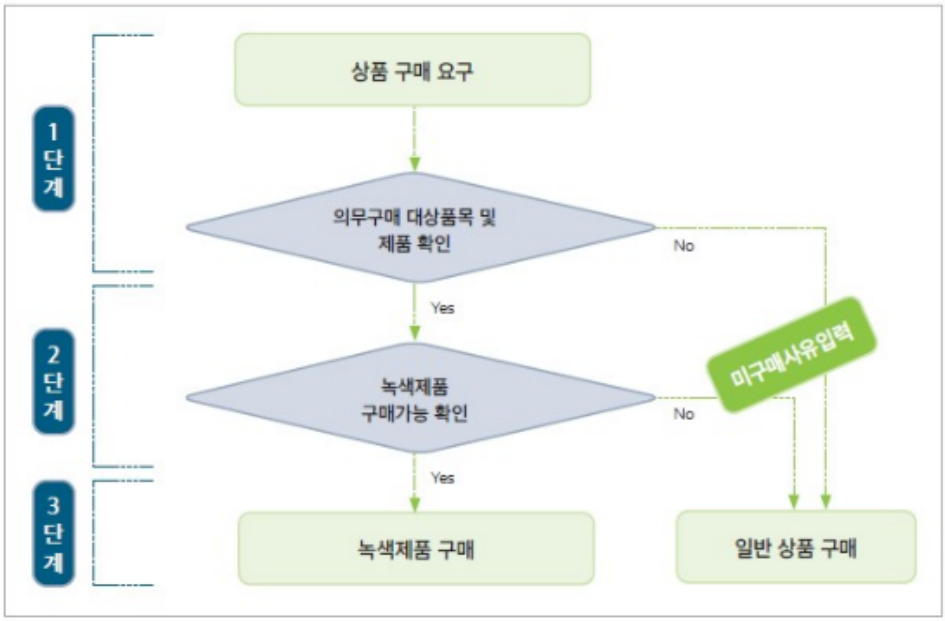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정사유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3.2.2. 의무구매 절차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직접 물품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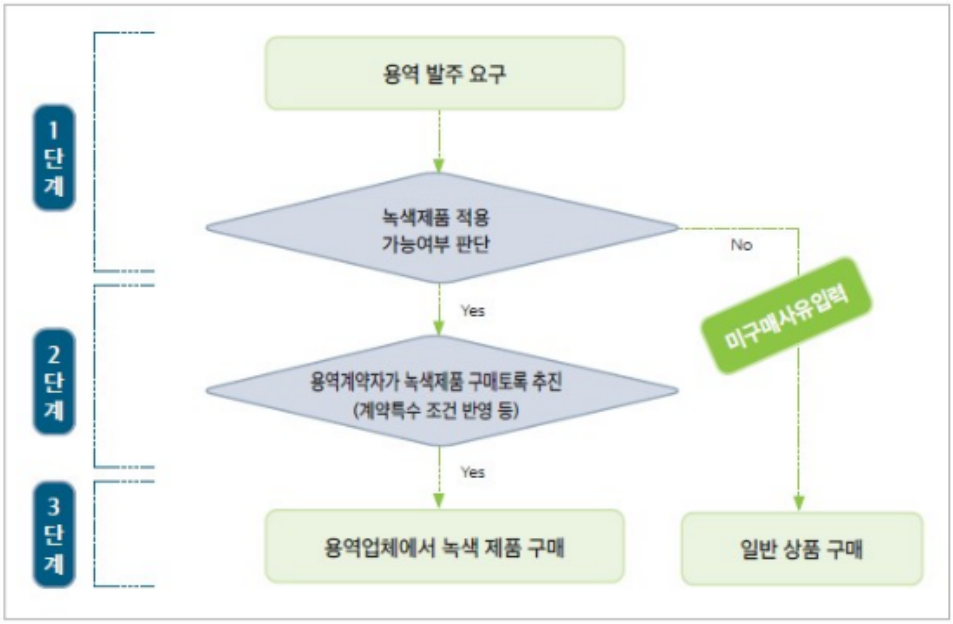
▪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2-13면 및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제품 정보에서 확인
2단계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려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3단계	녹색제품 구매 다음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 √ 녹색장터+(https://greenproduct.co.kr/) √ 녹색장터(https://greenproduct.kr/Mall/) √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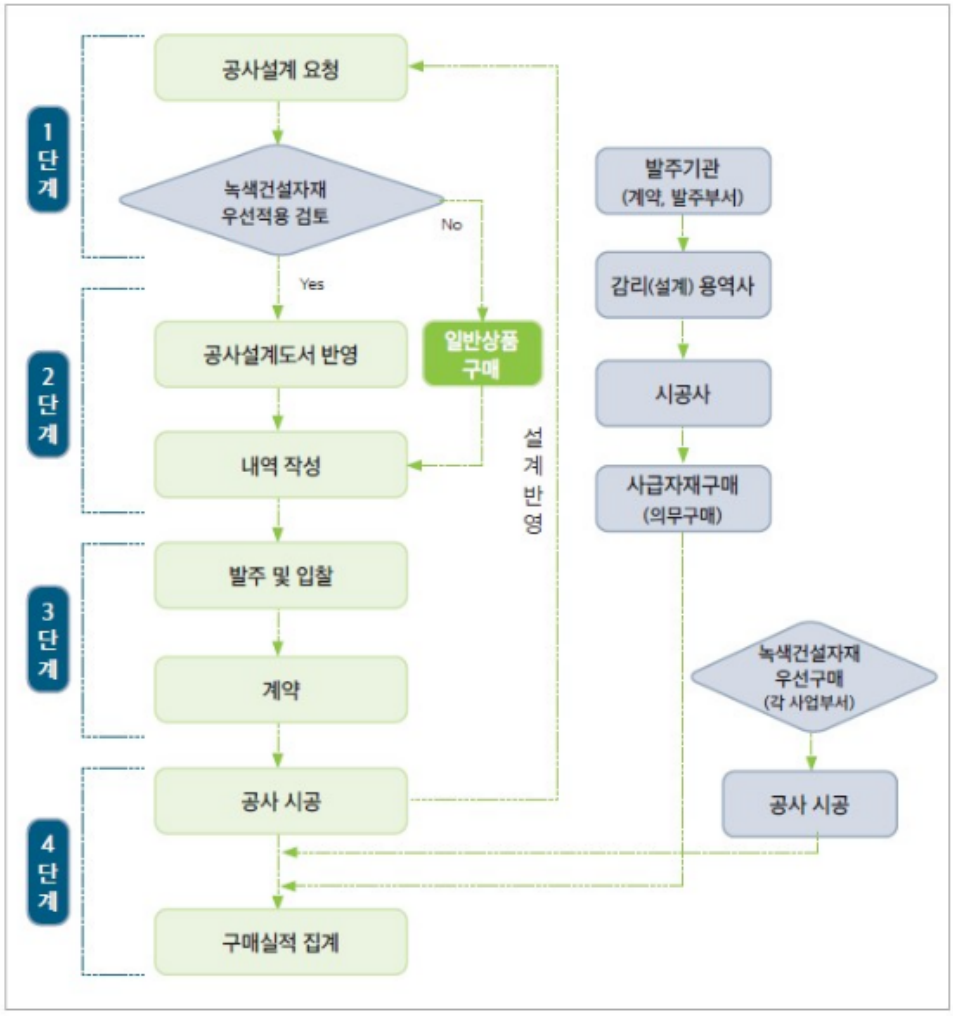
▪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를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3-14면 및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발주하려는 용역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가능여부 확인
2단계	계약담당자가 녹색제품 구매하도록 추진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및 정산·보고 명시
3단계	용역수행자가 녹색제품 구매 용역수행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려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4-16면 및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제품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적용 명시 √ 녹색제품 건설자재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친환경녹색진흥>친환경건설자재를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2단계	공사 설계도서 반영 √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3단계	공사입찰 및 계약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BTL 등의 공사발주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을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4단계	공사시공 √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시(하도급 공사 포함)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으로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구매·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5단계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실적 집계 반영 √ 발주 공공기관은 시공완료 후 정산 시 시공사에게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 요구 √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3.3.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3.3.1. 친환경대전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관련 행사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란 친환경 착한 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통한 친환경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홈페이지 참조).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녹색구매 정책을 공공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과 산업계로 확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추진활동들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6.), 19면)].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의 전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홈페이지 참조).

- 친환경 제품
- 친환경 에너지
- 친환경 건축
- 친환경 교통·수송
- 친환경 유통·서비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친환경 관련 협회·시민단체 등
- 환경교육·체험 등

>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의 참가안내 및 관람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소비 페스티벌

▪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이란 친환경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국민캠페인으로서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전후로 '친환경소비주간'을 제정하여 친환경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실천을 촉진하는 행사를 말합니다(『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면).

▪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친환경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업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07년 유통사와 친환경제품 유통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유통업계와 친환경소비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면).